

부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8월 4일 김관수·윤병국의원

나. 회부일자 : 2009년 9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9. 7) 상정·보류
- 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4. 22) 수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 병 국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천시의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예산 편성 전에 심층적으로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내용과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 현행 부천시의 용역 추진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하여 부천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 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명을 ‘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 용역과제 심의대상을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전액 국고 보조 용역,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용역은 제외하며, 학술 용역은 1천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규정(안 제3조)
-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으로 변경함.(안 제4조)

-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회는 공개로 진행하며 용역과 관련 있는 시민들의 참관과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토록 하고, 용역수행 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토록 함.

(안 제12조)

-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 용역 중간보고서와 최종성과품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사항 없음. - 단, 안 제3조 용역과제 심의 대상 중 당초 국고보조 용역을 국·도비 보조금 용역으로 수정함에 동의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에 동의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없음 있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있음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475호
의결 년월일	2010. 4. 26 (제160회)

제안년월일 : 2010. 4. 22.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용역과제 심의대상 단서 중 ‘국고보조 용역’을 ‘국·도비보조금 용역’으로 수정하도록 하여 제외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국고보조 용역’을 ‘국·도비보조금 용역’으로 수정함.
(안 제3조)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용역과제 심의대상) 용역과제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과 전액 국·도비보조금 용역,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에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용역과제 심의대상)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서 신설)</p>	<p>제3조(용역과제 심의대상) -- ----- -----.</p> <p>다만,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과 전액 <u>국고보조 용역</u>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p>	<p>제3조(용역과제 심의대상) -- ----- -----.</p> <p>----- <u>국·도비보조 용역</u> ----- -----.</p>

[수정안 포함]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 “2천만원이상인”을 “1천만원이상인”으로 한다.

다만,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과 전액 국·도비보조금 용역,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실무심으로 대체한다.

제4조의 제목 “구성”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보고회 등의 운영) ①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다만, 용역 수행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중간보고회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보고회는 공개로 진행하고 용역과 관련있는 시민들의 참관과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고회의 공개와 의견진술 등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용역결과 관리) ①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착수보고회 개최일 이전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진술된 의견요지 등을 보고회 날로부터 3일 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제2항의 단서와 관련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